



「2026년 제55회 전국소년체육대회」 경기용기구 구입 및 임차 과업지시서



부산광역시체육회

과업지시서

1. 적용범위

- 이 기준은 제55회 전국소년체육대회 경기용 기구 구입 및 임차에 대하여 적용한다.
 - 가. 부산광역시체육회 : “갑”이라 하고
 - 나. 납품 업체 : “을”이라 한다.

2. 목 적

- 제55회 전국소년체육대회 종목별 경기장 경기용 기구 구입 및 임차로서 계약자의 인도 설치 조건 및 기타 지원 사항에 있어 이행되어야 하는 세부 내용을 명시함에 그 목적이 있다.

3. 구매내역

- 총 38종목 종 점 : 별첨(규격서) ※ 품목 수량은 변동될 수 있음

4. 구매 및 규격의 범위

- 아래 각 사항에 준하여, 세부내역은 ‘세부규격’에 따른다.
 - 1) 제55회 전국소년체육대회 종목별 경기용 기구 구입 및 임차
 - 2) 물품은 구매 목적에 맞는 신품 또는 그 이상의 물품이어야 하며, 종목별 협회(연맹)의 규정 절차에 따라 검증된 물품이어야 하고, 경기규칙에 적합한 물품이어야 한다.

- 3) 국산 제작이 불가하거나 대회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이 요구할 경우, 물품 또는 그 구성품은 수입품을 사용하며 사용부품의 교체 및 보수, 점검이 용이하도록 한다.
- 단, 수입품은 수입신고필증(수입면장)사본을 첨부하여 납품한다.

5. 납품기한

- 본 물품의 납품은 착수일로부터 종목별 대회 일정에 따라 계약에 명시된 날까지 한다.
 - ※ 사업기간 : 계약일로부터 ~ 2026. 05. 22.
(사전경기종목 등 세부납품기한 별도협의)
- 물품의 검증을 위한 기간은 납품기간에 포함한다.

6. 대금지급

- 본 물품의 구매는 일괄 구매 방식으로 추진하며 전체 물품 납품 후 검수가 완료되면 대금을 지급한다.
 - ※ 구매목록의 수량 변경 시 실비정산을 원칙으로 함

7. 납품조건

- 1) “갑” 이 구입하고자 하는 종목별 경기용기구는 “갑” 이 지정하는 장소에 납품한다.
- 2) 납품 시 필요한 일체의 부품 및 부대비용(설치비용 포함)은 “을” 이 부담한다.
- 3) 납품된 물품내용이 규격서에 요구되는 성능, 사양을 수용할 수 없다고 판단되면 “갑” 의 검수자는 납품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, “을” 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.

- 4) 물품은 규격서를 100% 만족시키는 최신 정품, 완제품으로 공급되어야 하며 주요 구성품, 부품 또한 반드시 제조사의 정품을 사용하여야 한다.
- 5) 납품 시 파손이나 시험사용 중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 A/S를 불허 하며 동일제품의 신규제품으로 교체하여야 한다.
- 6) 납품되는 물품은 제조사에서 제공하는 제조일자가 표시된 보증서를 제공하여야 한다.
- 7) “을” 은 납품 시 각종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에 유의하여야 하며 본 물품의 납품기간 중 발생하는 각종 안전사고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진다.
- 8) 검수 완료 후에라도 물품사용 중 물품하자로 인한 각종 사고의 책임 (민·형사상)은 납품업체가 전액 변상 조치하여야 한다.
- 9) 계약 후 내역서에 명기된 규격을 기준으로 납품내역서(제작사, 제작국, 모델명, 모델사진, 제품설명서 - 한글 및 원문 매뉴얼, 기타)를 작성하여 “갑” 의 사전 심의를 거쳐야 한다.
(※ 물품에 대한 규격은 “갑” 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)
- 10) 경기장 철거 후 보관장소(훈련장)에 설치·운반을 하여야 한다.

8. 용기구 납품 규격검사

- “을” 은 납품 시 현장검정에 필요한 측정 장비와 검측인을 사전 준비하여 규격검정에 임해야 하고 다음의 항목에 관하여 행한다.
 - 1) 종목별 협회(연맹)의 검정필증과 납품용 기구 상이의 유무
 - 2) 승인도서와 상이의 유무
 - 3) 규격검사

- “갑”의 지시에 따라 용기구 규격검사 및 조립 완성도를 조사하기 위해 연결시험을 한다.
- 4) 동작검사 : 각 용기구의 기능상태 양호 및 불량

9. 하자보증 및 유지보수

- 1) 불량품 발견 시 동일 신품으로 1주일 이내 교환하고 공급된 물품에 대한 사후 A/S 기간은 납품 후 2년까지로 한다.
- 2) 무상 A/S 기간은 납품일로부터 2년까지로 하고 보증증권을 제출한다.
- 3) 하자 발생 시 경기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해야하며 수리지연으로 인해 경기업무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“을”은 상호협의(보상 등)하여 처리한다.
- 4) “을”은 무상유지보수기간에 동일하자가 2회 이상 발생하여 “갑”이 요구 할 경우 동급의 신제품으로 교환 조치하여야 한다.

10. 성과품 : 납품 완료된 물품의 사양서[사진포함] 3부

11. 기타사항

- 1)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된 모든 항목은 최소한의 사항만을 규정하였으므로 상세히 기술되지 않았거나 누락된 사항에 대하여 “을”은 사용상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조치를 하여야 한다.
- 2) “갑”과 “을” 간에 본 내용에 관하여 해석이 다를 경우는 “갑”的 해석에 따른다.